

공공기록관리혁신추진과제안

*개선안마련:(즉시)금년도정기국회법안제출필수과제/(단기)금년도말까지/(중기)19년말까지/(장기)20~21년말까지

대과제	세부과제	추진일정
1. 기록관리프로세스 재설계	1-1. 공공기록물의 개념 및 기록관리대상 정비	즉시
	1-2. 기록평가정책 수립 및 도구 재설계 : "BRM과의 관계" 우선 검토	장기
	1-3. 생산현황 통보제도 개선	단기/중기/장기
	1-4. 기록처분동결제도 도입	즉시
	1-5. 기록부존재 공익침해심사제도 도입	장기
	1-6. 기록물 매체수록 전략 수립	단기
2. 기록관리 기반 강화	2-1. 기록관 역할기능 정립 및 조직인력 배치기준 정비	즉시/단기
	2-2. 기록관리 기관평가제도 개선	단기
	2-3. 공공기관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	즉시/단기
	2-4. 지방기록관리제도 개선 및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 촉진	즉시/단기
	2-5.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역할 및 책임 강화	즉시
3. 기록전문직의 윤리 및 전문성 강화	3-1. 기록관리 직무윤리 교육 활성화	단기/중기/장기
	3-2. 기록전문직의 직무윤리 강령 제정 및 윤리위원회 설치 검토	중기
	3-3. 기록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체계화	단기/중기/장기
	3-4. 기록물관리기관 전문직 연구활동 및 인사교류 촉진	단기
4. 전자기록관리체계 재설계	4-1. 메타데이터 관리 혁신	중기
	4-2. 전자기록 이관모델 재설계	중기
	4-3. 전자기록 장기보존정책 수립	단기
	4-4. 전자기록 유형별 관리체계 및 포맷정책 재설계	중기
5. 기록정보공개·서비스 강화	5-1. 비공개기록물의 재분류제도 개선	즉시
	5-2. 비공개 상한제도 개선	중기
	5-3.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유 기록물 공개	중기
	5-4. 기록물 활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	단기
	5-5. 기록물 기술(記述)모델 재설계	중기
	5-6. 기록물관리기관 통합 기록정보검색서비스 체계 도입	장기

**세부과제
번호(3-1)**

기록전문직의 직무윤리 강령 제정 및 윤리위원회 설치 검토

□ 추진 배경

- 기록전문직의 직무윤리에 대한 기준 마련 및 시행을 통한 중립성·전문성 등 확보

□ 추진 내용

- 기록전문직의 직무윤리 기준 정립을 위한 윤리강령(안) 마련
 - ‘기록전문직 윤리강령’(안) 마련을 위한 사전조사
 - ‘윤리강령’(안)에 대한 원내외 전문가 의견수렴
 - ‘기록전문직 윤리강령’ 내용 확정
- ‘기록전문직 윤리강령’의 제도화 추진
 - 기록전문직의 직무윤리 기본원칙을 공공기록물법령에 반영·검토
 - ‘기록전문직 윤리강령’을 공공표준으로 제정
- ‘기록전문직 윤리강령’ 확산 추진
 - ‘기록전문직 윤리강령’ 설명자료 작성
 - 기록관리 교육과정에 교과목(직무윤리/윤리강령)으로 편성
 - 각급 기록물관리기관에 윤리강령 및 설명자료 등 배포
- ‘윤리강령’ 실행 준수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검토
 - 실행력 강화관련 ‘윤리위원회’ 설치 여부, 기록관리법령에 ‘윤리위원회’ 관련 조항 신설 여부 등 검토

《윤리위원회의 기능》

- 기록전문직의 직무윤리 위배 사항 및 부당한 업무처리, 부당한 압력 등에 의한 비리·분쟁 등 심의·처리
- 위배사례 및 위협요인 등의 조사, 심의, 개선조치 요구, 징계 및 감사 요청, 교육 및 홍보 활동으로 기록관리자의 소명의식 제고

□ 추진 전략 및 일정

○ '기록전문직 윤리강령' 제정(단기)

- 사전조사 및 '기록전문직' 윤리강령'(안) 마련
 - 기록전문직 직무윤리 관련 연구성과, 국내 다른 전문직 및 국외 기록전문직 윤리강령 사례, ICA 윤리강령 등 조사·분석(대상, 범위, 내용, 실행수단 등)
 - '기록전문직 윤리강령'(안) 작성
- '윤리강령'(안)에 대한 원내외 전문가 의견수렴
 - 원내 기록전문직, 기록물관리기관 및 민간 기록관리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등 추진
- '기록전문직 윤리강령' 내용 확정 및 제정

○ '기록전문직 윤리강령'의 제도화 추진(단기/중기)

- 기록전문직의 직무윤리 기본원칙을 공공기록물법령에 반영·검토(중기)
 - 직무윤리 기본원칙 선언의 법령 반영을 위한 타직렬의 직무윤리의 관련 법제화 사례조사·분석
- '기록전문직 윤리강령'을 공공표준으로 제정(단기)
 - ※ 표준화 계획 수립, 표준화 계획 심의 및 확정, 의견수렴 및 수정안 작성 후 국가(공공)표준안 확정

○ '기록전문직 윤리강령' 확산 추진(단기/중기)

- '기록전문직 윤리강령' 설명자료 작성(단기)
- 기록관리 교육과정에 교과목(직무윤리/윤리강령)으로 편성(단기)
 - '18년 기록관리교육센터 교육과정에 교과목 개설,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
- 각급 기록물관리기관에 윤리강령 및 설명자료 등 배포(중기)
 - 기록물관리기관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등에 전파

○ ‘윤리강령’ 실행 준수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검토(중기)

- 실행력 강화관련 ‘윤리위원회’ 설치 여부, 공공기록물법령에 ‘윤리위원회’ 관련 조항 신설 여부 등 검토

※ ‘윤리위원회’ 설치 및 공공기록물법령 반영과 관련하여 실효성의 의문 의견 제시(국가기록관리 혁신추진단 워크숍, '18. 2.27~28.)

○ 추진 일정

추진 일정		2018	2019	2020	2021
기록전문직 윤리강령 제정	사전조사 및 윤리강령(안) 마련(단기)				
	기록전문직 윤리강령(안) 작성(단기)				
	윤리강령(안)에 대한 의견수렴(단기)				
	‘기록전문직 윤리강령’ 내용 확정 및 제정(단기)				
기록전문직 윤리강령의 제도화 추진	기록전문직 직무윤리 기본원칙의 공공기록물법 반영·검토(중기)				
	기록전문직 윤리강령 공공표준으로 제정(단기)				
기록전문직 윤리강령 확산 추진	기록전문직 윤리강령 설명자료 작성(단기)				
	기록관리 교육과정에 교과목 편성(중기)				
	각급 기록물관리기관에 윤리강령 및 설명자료 등 배포(중기)				
윤리강령 실행 준수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검토	윤리위원회 설치 및 공공기록물법령에 윤리위원회 관련조항 신설 등 검토(중기)				

□ 쟁점 사항

〈윤리위원회 관련〉

- 직무윤리 원칙의 법제화(공공기록물법) 및 윤리위원회 설치의 실효성에 대한 사전검토 필요
 - 국가기록관리 혁신추진단 워크숍('18. 2.27.~28.)에서 직무윤리 원칙의 법제화 및 윤리위원회 설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의견

- 윤리강령 후속조치* 대상, 방식, 절차 등 규정시 규제로 작용 가능성 제기
 - * 위반시 조치업무(윤리위원회 설립·운영)
- 윤리위원회가 상징성 가질 수 있으나 관할 기관범위, 기능, 후속 조치 등에 실효성 의문

〈윤리강령의 대상범위〉

- 기록전문직의 윤리강령의 적용범위를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종사자로 한정하거나 ‘기록전문직 윤리강화’ 혁신과제의 삭제 의견
 - 국가기록원 기록전문직 이외(행정직 등)의 직원들의 적용여부
 - 기록관 단계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정체성은 확고하며, 개인에게 부과하는 윤리강화는 실효성도 없고 부담만 가중
 - 직무윤리 위배사항 발생시 공무원 행동강령, 감사 등을 통해 처분 가능

□ 조치 필요사항

- 공공기록물법상 규정 반영

구분	제·개정 필요 조문
법률	
시행령	
시행규칙	
지침/표준	공공표준 : 기록전문직 윤리강령 제정

- 기록전문직 윤리강령 제정 및 윤리위원회 설치 등과 관련하여 원내 협조 필요
 - 기록전문직 윤리강령 표준 제정(정책기획과)
 - 공공기록물법에 윤리위원회 관련 조항 신설시·검토(정책기획과)
 - 윤리위원회 신설시 윤리위원회 기능의 국가기록원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반영(정책기획과)

주관	기록관리교육센터(김순빈)	협조	
----	---------------	----	--

**세부과제
번호(3-2)**

기록관리 직무윤리 교육 활성화

□ 추진 배경

- 기록전문직의 직무윤리를 강화하여 기록관리 업무의 중립성과 전문성 등에 대한 인식 확립으로 국민적 신뢰 확보
 - 기록관리 교육과정에 직무윤리 교육 반영 및 중앙·영구기록물관리기관 주관 연례교육 등 추진

□ 추진 내용

- 국가기록원 교육과정에 직무윤리 과목 개설로 기록관리 윤리 실천 확립
 - 기록물관리전문가·기록관과정 등 교육과정에 직무윤리 교육 실시
 - ※ '18년 직무윤리 과목 개설·운영, '19년 이후 직무윤리 교육과정 확대 편성·운영
 -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·운영으로 교육 대상 및 참여 인원 확대
- 기록물관리기관 관리자(기관장 등) 등 대상 직무윤리 교육 실시
 - 중앙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주관 연례교육 의무화 추진
 - ※ 기관장 대상 회의, 협의체 개최, 기록물관리지침 교육 시 교육내용 편성·운영
 -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자체 직무윤리 교육 추진토록 컨설팅·교육 병행 추진

□ 추진 전략 및 일정

- 국가기록원 교육과정에 직무윤리 과목 개설 등 윤리교육 계획 수립으로 교육 활성화 추진
 - ('18년) 기록물관리전문가과정(신규·주니어·시니어), 관리자과정 등 4개 교육과정에 직무윤리 과목 개설(즉시)
 - ('19년 이후) 강사양성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등 6개 과정에 직무

윤리 과목 확대 개설 · 운영(단기)

- ※ 기록물관리전문가(신규 · 주니어 · 시니어) · 관리자 · 강사양성 ·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정
- 직무윤리 사이버 콘텐츠 개발('19년) 및 과정 운영으로 교육 대상, 참여 인원 확대(중기)
- ※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직무윤리 콘텐츠 제공으로 윤리의식 확산

○ 기록물관리기관 직무윤리 교육 추진

- 직무윤리 교육대상자별 맞춤형 교육 실시(중기)
 - ※ 대상별(전문요원, 전문인력, 기록관리종사자)로 교육내용, 교육방법(특별교육, 방문, 사이버 등)을 수준별로 편성 · 운영
- 기관장 대상 원내 회의나 협의체 개최시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교육내용 편성 · 지원(중기)
- 기록물관리지침에 직무윤리 내용 반영, 중앙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주관 연례교육 의무화 추진(중기)
- 중 · 장기적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자체 직무윤리 교육 추진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과정(강사양성과정 등) 운영(중기)
 - ※ 기록관리 직무윤리 관련 표준교재 개발 및 보급,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정에 직무교육 교과목 개설 및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강의스킬과정 필수 이수 추진

○ 추진 일정

추진 일정		2018	2019	2020	2021
국가기록원 교육과정에 직무윤리 과목 개설	교육과정 직무윤리 과목 개설(즉시)				
	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, 운영 및 교육기관 제공(단기/중기)				
기록물관리기관 관리자 대상 직무윤리 교육	기관장 대상 원내 회의 · 협의체 개최시 교육내용 편성 · 지원(중기)				
	중앙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주관 연례교육 실시(중기)				
	영구기록물관리기관 컨설팅 · 교육(중기)				

□ 조치 필요사항

- 기록물관리기관 대상 원내 회의 등 개최시 사전 교육센터로 협조 요청

주관	기록관리교육센터(김명옥)	협조	
----	---------------	----	--

**세부과제
번호(3-3)**

기록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체계화

□ 추진 배경

- 정보기술 및 기록관리 환경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전문성 신장교육 필요
 - 새로운 기록유형 출현(SNS기록, 웹기록 등) 및 전자기록시대 본격화로, 생동하는 기록관리 현장에 비해 기존 기록관리 방법론과의 간극 발생
 - ※ 소극적이며 보존우주의 기록관리에서 적극적이고 서비스 우주의 전문적인 기록관리의 시대로 돌입
- 국제적 수준의 대상별·분야별 고급전문가 양성 필요
 - 대상별·분야별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심화 교육 프로그램 미흡
 - ※ 현행 기록관리 교육과정(기본, 특별, 사이버 등)으로는 부족, 분야별 심화과정 추가 필요

□ 추진 내용

- 기록전문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프로그램 재설계
 - 기록전문직의 필요역량 도출 및 역량표준 개발
 - 기록전문직의 대상별·수준별·분야별 역량개발 프로그램 설계
 - 기록전문직의 직무별 재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
- 기록전문직 대상 직무교육 의무화 및 인적·제도적 기반 마련
 - 기록전문 강의와 교안연구를 전담할 교육위원(전임교수) 위촉
 - 5년 연속근무 단위로 재교육 이수 의무화 및 전문성 인증제도 마련
- 공공기관 직원 대상 기록관리교육 기본이수 의무화
 - 교육훈련 관련 지침 또는 규정에 의무화 근거 마련
 -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및 시도 지자체의 교육과정에 포함 요청
- 맞춤형 “특별교육과정” 개설 확대 및 민간기록관리 지원·개방
 - 기관별 또는 대상별 맞춤형 특별과정 개설·운영
 - 비공공기관의 전문요원 및 민간분야 기록활동가에게도 교육기회 제공

□ 추진 전략 및 일정

- 전문성 개발을 위한 직무교육프로그램 설계 (단기)
 - 대상기관별 기록관리 직무분석 및 필요역량 도출
(선행연구, 국내외 기관별 직무현황 조사, 교육이후 설문조사 참고)
 - 국내외 기록관련 교육프로그램 교과목 비교분석
(국가기록원 및 미국, 호주 등 해외사례 포함)
 - 기록관리 역량표준(안) 마련 후 단계별 직무교육프로그램 설계
 - 직무교육프로그램 설계(안) 마련 후 원내외 의견수렴 및 보완
 - 기록관리 직무교육 종합계획(안) 수립 후 연차별 적용

<선행연구검토> 국가기록원 재교육프로그램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, 국외 기록관리 전문직 유형 및 역할 분석, 기록관리분야 직무능력표준 개발방안 연구,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직무능력분석 및 시험평가영역 기준 개발 연구 등 다수

<의견조회과정> 국가기록원 원내 직원 토론회, 기록전문직 자문단에 안건 상정, 기록학회(대학원, 교육원) 및 학·협회와의 논의 필요

- 기록전문직 대상의 직무교육 의무화 및 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적·제도적 기반 마련(중기)
 - 재교육 품질보장을 위한 전담교수요원 확보(인력충원, 교수pool활용)(계속)
 - 5년에 1회 이상 재교육과정 이수 의무화 방안 마련
 - (운영주체) 교육센터에서 재교육과정 신규 개설·운영하거나, 학계(대학원, 교육원, 학협회)에서 재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위탁운영하는 방안 검토
 - (교육시간) 재교육과정별 적정 운영시간 검토(예시 : 과정당 100h)
 - (교육결과) 단순 수료증보다는 '인증서'를 발급하여 전문자격으로 인정
 - (제도화) 공공기록물법시행령에 반영

<공공기록물관리법시행령 제79조 4항>

(현재)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아닌 기록물관리기관의 종사자는 보직 전 또는 보직 후 6개월 이내 기록물관리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.

(개선)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아닌(삭제) 기록물관리기관의 종사자는 보직 전 또는 보직 후 6개월 이내 기록물관리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고, 연속근무 5년에 1회 이상 재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.

-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유자격자 ‘등록제’ 검토

- 현행 자격증 발급제도로도 ‘등록제’ 가능. 다만, 지금까지 각 대학원에서 석박사과정만 취득하고, 자격증 발급으로 연계되지 않아 자격증 미발급자가 다수 (각 대학원에 자격증 발급을 위한 안내 공문 시행 필요)
- 향후 기록관리 학·협회로 업무이관 여부 검토

<해외사례조사> 기록관리전문가 유자격자 등록제에 대한 영국 등 해외사례 조사

<의견조회과정> 국가기록원 원내 직원 토론, 기록전문직 자문단에 안건 상정, 기록학계 (대학원, 교육원) 및 학·협회와의 논의 필요

- 기록관리교육기관의 재교육과정 이수시 ‘인증서’ 제도화 및 인사혜택 반영

<해외사례검토> 미국의 공인아키비스트(Certified Archivists), 공인 기록관리자(Certified Records Managers) 제도, 미국 NARA Learning Center의 레코드매니저 인증서 발급 등

<의견조회과정> 국가기록원 원내 직원 토론, 기록전문직 자문단에 안건 상정, 기록학계 (대학원, 교육원) 및 학·협회와의 논의 필요

○ 공공기관 직원대상의 기록관리교육 기본이수 의무화 (단기)

- 공무원인재개발지침*에 기록관리교육 필수이수 등재 요청

***공무원인재개발지침** : 공무원인재개발법 제2조에 따라 매년 인사혁신처에서 각 교육훈련 기관에 통보하는 지침으로, 인재교육의 연간 목표와 교육훈련의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. 여기서 ‘청렴교육’, ‘공직가치함양’ 등의 특별한 교육방향이 제시됨

- 공무원교육훈련기관(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총33개기관) 및 지자체 교육훈련기관 교육과정 중에 기록관리 과목개설 협조공문 시행

○ 맞춤형 “특별교육과정” 개설 및 민간기록관리 지원 검토(단기)

- 기관유형별, 영역별 맞춤형 특별과정 개설 확대

※(예시) '18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과정 신규개설→ '19 지방기록물관리기관 과정 등 신규개설(전년도 교육운영결과 반영, 신규 교육수요를 예측하여 특별과정 설계)

- 비공공기관 기록관리종사자, 민간분야 기록활동가, 민간기록관리 과정 등 특별교육과정 필요성 또는 효율성 검토

○ 추진 일정

추진 일정		2018	2019	2020	2021
전문성 개발을 위한 직무교육프로그램 설계	대상기관별 기록관리 직무분 석 및 필요역량 도출(단기)				
	기록관련 교육프로그램 교과목 비교분석 및 프로그램 설계(단기)				
	직무교육프로그램 설계(안) 원내의견 수렴(단기)				
	기록관리 직무교육 종합계획(안) 수립 및 적용(단기)				
기록전문직 직무교육 의무화 및 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적·제도적 기반 마련	전담교수요원 확보(중기)				
	재교육과정 이수 의무화 방안 마련(중기)				
	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유자격자 '등록제' 검토(단기)				
	기록관리 재교육과정 이수시 '인증서 제도화 및 인사혜택 반영(중기)				
공공기관 직원대상 기록관리교육 기본이수 의무화	공무원인재개발지침에 기록관리 교육 필수이수 등재 요청(단기)				
	교육훈련기관 교육과정에 기록 관리 과목 개설 추진(즉시)				
맞춤형 특별교육과정 개설 및 민간기록관리 지원 검토	기관유형별, 영역별 맞춤형 특별과정 개설 확대(단기)				
	비공공기관 기록관리종사자, 민간분야 기록활동가 등 특별교 육과정 필요성·효율성 검토(단기)				

□ 조치 필요사항

- 공공기록물관리법령상 규정 제·개정 필요 ('19년 이후)

구분	제·개정 필요 조문
법률	제9조, 제42조
시행령	제78조(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과 배치) ⑤항에 '등록제' 언급 (개정) 제79조(기록관리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) - 기록관리전문요원 포함 기록관리종사자는 보직 6개월 전후 교육 이수 (개정) - 기록관리종사자 5년에 1회 이상 재교육 의무화 (추가) - 기록관리종사자 인증제에 대한 건 (추가)
시행규칙	제42조의 2(기록관리 전문요원 시험의 실시) 조문 (수정) 제42조의 5(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) 조문 (수정)
지침/표준	기록관리 교육훈련 운영규정 (2016.3.11. 훈령 제121호) - 기록관리종사자의 5년에 1회 이상 재교육과정에 대한 사항(추가) - 기록관리종사자의 인증서 발급에 관한 건 (추가)

○ 관계부처(부서) 협의 필요

- 기관별 기록물관리 종사자 및 원내 전문요원과의 의견 검토

○ 기타 조치 필요사항

- 원내외 관계자 및 기록관련 학·협회와의 토론회 또는 공청회 필요

□ **쟁점 사항**

-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및 종사자 업무범위에 따라 필요지식이 유동적이어서, 연차별 또는 특정기간 단위로 지속적으로 갱신될 필요 있음
※기록관근무자,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근무자, 시스템전문가, 기록물복원전문가 등
- 기록관리 인력양성을 위한 학계(대학, 대학원, 교육원)와 우리원 교육센터와의 역할분담 및 공조 필요
- 재교육 의무화로 인하여 교육이 강제성으로 비쳐질 우려 있으며,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조치사항도 병행 검토 필요
- '인증제' 내용과 발급에 대한 사항은 기존의 '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증'과의 관계와 향후 인사제도와의 연계를 신중히 고려해야 함
- 자격증 발급(협회로 이관) 및 인증제 도입 등은 기록관리 학·협회와 긴밀한 협의가 우선 필요함

- '민간'대상으로 교육과정을 개방할 경우 '공무원교육훈련기관'으로서의 역할범주에서 벗어난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나, '지역공동체'를 위한 개방·확산·홍보의 일환일 경우에는 교육평가시 권장하는 추세이므로 민간 개방·지원에 적극성 필요
- 기록관리 전문성 강화 교육프로그램 체계화와 관련하여 현 국가 기록원 기록관리교육센터에서의 역할의 적정성 검토 필요

주관	행정지원과(김용석)	협조	-
----	------------	----	---

**세부과제
번호(3-4)**

기록물관리기관 전문직 연구활동 및 인사교류 촉진

□ **추진 배경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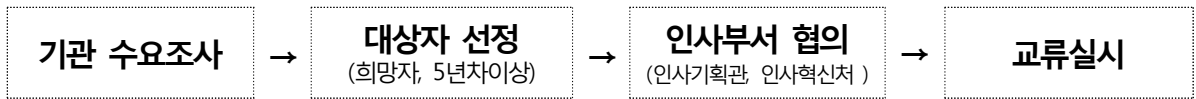
- 다양한 연구의 현장적응성 확보를 위한 내부전문가의 연구 활동 노력 부족
 - 전문직(연구직·사서직) 연구실적의 체계적 관리와 보상을 통하여 기록을 연구하는 국가기록원의 역할 정립 필요
- 기록관리 현장과 괴리된 기록관리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 확산
 - 각급 공공기관 기록관의 실태 등에 기반 한 국가기록원의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직 인사교류 확대 필요
 - ※ 교류이후 인센티브 미흡과 개인 희망원칙으로 실효성 부족(인사관리규정, '17.5.22 제정)
 - '13.12.~'14.12. 기간 동안 중기청(남신우), 산림청(최희진), 문체부(권미현) 실시

□ **추진 내용**

- (연구활동) 연구실적 평가기준의 객관성·공정성을 확보하고, 개별 인사와의 연계 추진
 - 연구활동의 성격, 기여도 및 참여횟수 등을 고려하여 세분화된 연구실적 심사표 개정
 - ※ (원내) 단순참여 불인정, 원내 등록모임에서 발표·연구관련 기고만 인정 등
 - (원외) 주저자, 주참여자, 단독번역, 학위취득은 항목별 건당 최대배점 인정 등
 - 내부인사로 구성된 연구실적심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추가적으로 반영
 - ※ 위원장은 기록정책부장, 위원은 위원장 포함 5인으로 구성하며 연구직 및 사서직 과장급 또는 담당급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(인사관리규정 제24조)
 - 개인별 연구실적 누적관리를 제도화하고 축척된 연구실적을 고려한 인사 실시

- (인사교류) 기록연구직의 각급기관과의 의무적인 인사교류를 제도화
 - 연구사 신규임용 후 5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연구관 승진 前, 1년 이상의 인사교류 의무화
 - ※ 각급 기록관의 1:1 교류를 원칙. 단,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와 같은 파견의 경우도 인정
 - 교류대상기관 수요과약 등 연간계획 수립하여 체계적·단계적 추진
 - ※ 사서직 및 학예연구직은 희망 시 도서관 및 박물관 등과 교류 추진

< 추진절차 >



□ 추진 전략 및 일정

- 인사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직원 의견수렴 실시(4월중)
- 원내 정책조정회의 상정(4월말)
- 훈령 개정 요청 및 공표(5월초)

□ 조치 필요사항

- 국가기록원 인사관리규정(훈령) 개정

구분	제·개정 필요 조문
훈령	(연구활동) 제24조, 별표 (인사교류) 제14조

□ 쟁점 사항

- 연구실적 관리로 인한 연구직의 업무부담 증가 및 성과급 반영 등 인센티브로 인한 타 직렬과의 형평성 논란
- 기 승진자와 기록직 이외의 연구직과의 차별성 등으로 인사교류 의무화의 한계점 노출
 - 각급 기록관의 희망자 수요가 없을 경우 교류가 불가능해지고, 1인 기록관의 업무연속성 저하 우려 상존

붙임1

연구실적 심사 세부기준

구분	항목(최대배점)	세부기준	
원내 연구활동	연구세미나 (3)	· 원내 등록된 연구모임(2개)의 세미나에 한해서 인정함. -단순참여 불인정, 발표(발제) 시 건당 1점/ 최대3점	
	시책건의 (5)	· 기여율 및 채택가능성이 인정되면 건당 5점/ 최대5점	
	원내 발간지 기고 (3)	· 연구관련 기고만 인정, 건당 1.5점/ 최대 3점 -참가기, 동향 등 단순 기고는 불인정	
	기록관리교육 센터 강의 (3)	· 비교수요원의 기록관리교육센터 강의 및 교육센터를 통한 외부기관 출강 시만 인정, 건당 0.5점/ 최대 3점	
대외 연구활동	논문	국제수준학술지 (15)	· 논문, 학회지 및 학술지 기고, 저서(창작) 및 산업재산권의 경우 단독저자, 공저 중 주저자 및 주참여자는 항목별 건당 최대배점을 인정, 여러 건인 경우에도 최대배점까지만 인정함. - 주저자 및 주참여자가 아닌 경우에는 1/공저자수×최대배점으로 계산하여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. · 단독번역은 건당 최대배점으로 인정, 여러 건인 경우에도 최대배점까지만 인정하며 공동번역 시 1/번역자수×최대배점 으로 계산하여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. · 학회 및 학술대회 발표 시 건당 5점/ 최대 5점
		학술진흥재단 등재지(10)	
	학회지 및 학술지 기고 (5)		
	학회 및 학술 대회 발표 (5)		
	저서	창작 (10)	
		번역 (5)	
산업재산권 (10)			
관련분야 학위 취득	박사(7)	· 건당 최대 배점을 인정하며, 여러 건인 경우에도 최대배점까지만 인정함.	
	석사(5)		
관련분야 자격증 취득 (5)			

※ 인사관리규정 [별표1] 평가기준표에 세부기준 추가

붙임2

인사관리규정 개정(안) 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4조(인사교류) ①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② (생 략)</p> <p>③ <u>인사교류 대상자 선정, 제2항과 관련한 인센티브 등 인사교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</u></p>	<p>제14조(인사교류) ① (생 략)</p> <p>② 제1항의 인사교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연구관 승진 전 연구직 공무원 중 최초임용 후 5년 이상 근무한자는 의무적으로 실시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③ (생 략)</p> <p>④ <u>제3항과 관련한 인센티브 등 인사교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</u></p>
<p>제24조(연구실적관리위원회) ① ~ ② (생 략)</p> <p>③ 위원장은 기록정책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연구직 및 사서직 과장급 및 담당급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.</p>	<p>제24조(연구실적관리위원회) ① ~ ② (생 략)</p> <p>③ 위원장은 기록정책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연구직 및 사서직 과장급·담당급 및 <u>외부인사</u>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.</p>
<p>[별표1] 평가기준표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연구활동별 평가기준표</p>	<p>[별표1] 평가기준표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연구활동별 평가기준표</p> <p>※ 항목별 세부기준 추가</p>